

##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64조,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4. 19.

###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장



- 건명: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
- 근거: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조, 고용보험법 제64조, 동법 시행령 제8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 사유	주소
김*재	1967. 1. 11.	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	소정급여일수 1/2 미만 취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	폐문부재	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(이하생략)

- 공고 기간: 2024. 4. 19.~2024. 5. 3.(15일간)
- 기타 사항은 음성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신용식(☎ 043-880-860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